

# 2023년도 제1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5. 11.(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9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반하람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45건(안전번호 제2023-33981호~34525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33981호~33983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33985호~34019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34020호~34028호는 중고거래 카페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34029호~34038호는 웹하드 및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34039호~3452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56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9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99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하병현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64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3-33981호~34525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3-33981호~3398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중인 사안 총 5건임.

(안건번호 제2023-3398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해당 안건번호 제2023-33981호~33984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위원: 안건번호 제2023-33983호의 채증자료를 살펴보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 ♣♣ ♣♣♣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 ★★ ★★ ★★ ★★ ★★ ★★ ★★ ★★’으로 연결되고, 이 사이트에 게시된 직접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됨. 그렇다면 심의 대상 게시물이 ‘★★ ★★ ★★ ★★ ★★ ★★ ★★ ★★ ★★’이 아닌 ‘♣♣♣ ♣♣ ♣♣♣ 바로가기’인 이유가 무엇인지.

- 반하람 주임: ‘★★ ★★ ★★ ★★ ★★ ★★ ★★ ★★ ★★’이 해외 서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나, 관련 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 후 다음 제2023-111회 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33981호~3398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3981호~33984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안전번호 제2023-33985호~3401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등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52건임. (안전번호 제2023-33985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있음. 해당 기기는 실시간 방송 및 VOD를 불법으로 연결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함. 본건 기기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시자가 본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 건 판매자는 본 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33985호~3401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3985호~3401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들의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34020호~3402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0건임.

(안전번호 제2023-3402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번개장터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34020호~34028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

견입.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심장섭 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PDF파일로는 제공되지 않는 교재들을 게시자들이 PDF화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혹시 교재들의 PDF파일은 모두 불법복제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 위정현 위원: PDF화해서 판매하는 교재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신창환 위원: 정식 발매된 전자출판물의 경우 주로 이펙(Epub)의 파일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PDF의 경우 불법복제물일 확률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34020호~3402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4020호~34028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34029호~34038호는 권리자(실명 1인) 및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블로그에 게시된 출판·영상(방송)의 불법복제물 총 13건임.

(안전번호 제2023-3403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영상(방송) '■■■■■■■■ ■■■■■■'를 제공 중임. 50화 디렉터즈 컷의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34029호~34038호의 13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34029호~3403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4029호~34038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34039호~3452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만화 '먼작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34168호는 웹하드에서 만화 '먼작귀'의 1권에서 3권을 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2. 15.에 정식 한국어판 3권이 발매된 출판 만화임.

(드라마 '안도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34201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안도르'의 1화에서 12화를 93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2. 10. 5.부터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제공 중인 드라마임.

(PC 온라인 게임 '호그와트 레저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34230호는 웹하드에서 PC 온라인 게임 '호그와트 레저시'를 1,93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스팀에서 2023. 2. 10에 발매되어 68,800원에 판매중인 게임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34039호~3452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3-34039호~3452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4039호~3452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33981호~33984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33985호~34019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34020호~34028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34029호~34038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34039호~3452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18.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